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6년 03월 0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방**	방** 1953-10-24	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3930번길	무단전출
정**	정** 1976-03-20	강원도 속초시 미리내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 진 화 문의전화 : 033-639-2647)

2016년 02월 29일

청호동장 인

